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탁금 출급 사실 통지 제도 신설 〉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908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탁금 출급 사실 통지 제도 신설	2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5.

(3) 회 부 일 : 2025.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않음. 피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Ⅲ. 검토의견

1. 공탁금 출급 사실 통지 제도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조의2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생략)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나. 현행 「공탁법」상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

원칙적으로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상의 제도인 바¹⁾,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1)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일컫는 용어임.

현행 「공탁법」 제4조²⁾ 및 동법 시행규칙³⁾에 따르면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함이 원칙인바,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형사소송법」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⁶⁾ 등에 의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4)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조(열람 복사의 절차 등)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2020년 12월 8일 「공탁법」 개정을 통해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가 신설되었는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 기습공탁 등 방지를 위한 최근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의 개정 내용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피해의 본질이 금전인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의 경우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인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 있어서도 공탁이 양형의 감경 요소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인지한뒤 재판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기습공탁’을 실시하거나⁷⁾, 가해자가 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사이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이른바 ‘먹튀공탁’ 사례가 발생하여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⁸⁾.

이에 피고인의 공탁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가해자의 형량에 피해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피공탁자 또는

7) KBS, “판결 988건 최초 분석…절반 이상 ‘기습공탁’”, 2023년 11월 20일자 기사 참조.

8) 머니투데이, “이탄희 “먹튀 공탁 통한 감형 막아야”...송경호 “다각도 조치””, 2023년 10월 17일자 기사, 법무부 보도자료,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년 7월 23일자 기사 등 참조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2202274호)과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2202293호)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 9. 26.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2024.9.26. 본회의 의결, 2024.10.16. 공포) >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공탁법」 제9조의2(2024.9.26. 본회의 의결, 2024.10.16. 공포) >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라. 검토의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이 주로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보완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바, 최근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기습출급(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야기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 후, 공판기일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와 공탁자인 피고인이 공탁물을 회수해도 좋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전부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하여 선고한 사례가 발생한 것임⁹⁾.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가 판결 선고 직전 공탁금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가 있는 때에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공탁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안재명, 조한주, “재판부 속이는 피해자의 공탁금 ‘기습수령’ 논란”, 2024년 12월 18일자 법률신문 참조.

다만, 개정안은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청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른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어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공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의 취지가 ‘기습출급(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임을 고려할 때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공탁에서 공탁관의 통지 절차가 작동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근 이른바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규정인 제9조(공탁물 수령·회수)에 가지번호로 관련 규정을 신설한바 있음¹⁰⁾.

10)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⑤ (생략)

문 의 처

02)6788-5058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